

해외 출장 보고

- 미국의 공무원, 경찰, 피해여성시설 담당자, 학자 등 관련자
면담 및 자료수집 -

2013. 7. 22

보고자 : 장 미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 개요

<p>▣ 과제명</p>	<p>「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p>
<p>▣ 출장 내용</p>	<p>(목적) 미국의 성착취적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책, 법률적 처벌현황, 지원기관 관련 담당자와 전문가 면담 및 자료 수집</p> <p>(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현황과 관련 정책 그리고 여성쉼터를 비롯한 피해자 관련 시설에 관한 면담 및 자료 수집</p> <p>(면담 및 집담회 대상 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여성학 전공 교수 Julietta Hua - 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 Ellyn Bell - San Francisco Office of District Attorney Tara Anderson & Giles Feinberg - Asian Women's Shelter Hediana Utarti & Hui Chen - San Francisco Police Department Arlin Vanderbilt - 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 Hyun-mi Kim
<p>▣ 출장자</p>	<p>장미혜</p>
<p>▣ 출장지</p>	<p>미국(캘리포니아)</p>
<p>▣ 출장</p>	<p>‘13.6.30 - 7.9 (8박10일)</p>

기간	
▣비용 부담	본원 연구사업비

II. 목적

- 미국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피해자 현황 및 관련 정책과 서비스 내용 등 자료 수집
- 방문기관 및 관련자 면담
 - 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 내에서 인신매매의 피해가 가장 심한 네개의 주 가운데 하나이자 한인 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임.
 - 캘리포니아 지역의 성착취적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책, 지원기관, 법률적 처벌현황 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함.
 - ⇒San Francisco Government 방문
 - ⇒San Francisco Police Department(SFPD) 방문
 - ⇒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SAGE), Asian Women's Shelter 등 NGO 방문
 - 캘리포니아 지역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한국인 피해자 지원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가 필요함.
 - ⇒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의 한국인 교포 변호사와의 미팅을 통해 한국인 피해자 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함.

III. 출장 인력 구성

	기관	부서	직위	이름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장미혜

IV. 출장 기간

미국 : '13. 6. 30(일) - 7. 9(일) (8박10일)

V. 세부 일정

미국

일정		내용	장소(주소 및 연락처)
6.30(일)	인천공항 출발 샌프란시 스코도착	6월 30일 16시 35분 인천출발 6월 30일 11시 25분 샌프란시스코 도착	
7.1(월)	면담일정 및 질문 내용정리	1000-1200 에코젠더 면담자: 고경희(에코젠더 사무국장) 석부리(에코젠더)	연락처: 415-341-2055
		15:00-17:00 면담자: Julietta Hua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교수	주소: HUM 450(연구실), 1600 Holloway Avenue, San Francisco, CA 94132 연락처: 415-338-3150
7.2(화)	면담일정 및 질문 내용정리	10:00-12:00 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 방문 면담자: Ellyn Bell SAGE Executive Director	주소: 68 Twelfth Street, Second Floor, San Francisco, CA 94103 연락처: 415-905-5050
		15:00-17:00 면담자: Tara Anderson San Francisco Government Grants & Policy Manager	주소: 850 Bryant Street, Room 322, San Francisco, CA 94103 연락처: 415-553-1203
7.3(수)	면담일정 및 질문 내용정리	12:00-18:00 SFPD 경찰 방문 면담자: Arlin Vanderbilt SFPD 경찰	주소: 1121 Missio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3 연락처: 415-567-6255

7.4(목)			
7.5(금)		10:00-12:00 Hyun-mi Kim Client Advocate / Legal Caseworker	Tel: (415) 567-6255 hmkim@apilegaloutreach. org 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 1121 Mission Street San Francisco, CA 94103
		14:00-16:00 Asian Women's Shelter 방문 면담자: Hediana Utarti Asian Women's Shelter Community Projects Coordinator	주소: 405 Arguello/Clement #200, San Francisco, CA 연락처: 415-751-7110 (기관 전화번호)
7/6(토) -7(일)	샌프란시 스코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7월 6일 10시 45분 샌프란시스코 출발 7월 7일 14시 40분 인천 도착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인한 샌프란시스코 공행폐쇄로 항공기 결항
7/8(월) 7/9(화)	샌프란시 스코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7월 8일 1시 40분 샌프란시스코 출발 일본 나리따 경유 7월 9일 8시 40분 인천 도착	

VI. 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내용

1. 수집한 자료목록

■ Articles

UNODC, 2009.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Kamal D. Harris. 2012. The State of California.

U.S. Department of State. 201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Site Internet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http://oag.ca.gov/human-trafficking>

Californians Against Sexual Exploitation(CASE Act):

<http://www.caseact.org/learn/law/>

San Francisco Collaborative Against Human Trafficking:

<http://www.sf-hrc.org/index.aspx?page=175>

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 : <http://sagesf.org/>

Asian Women's Shelter : <http://www.sfaws.org/>

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

<http://www.apilegaloutreach.org/trafficking.html>

San Francisco Chronicle : <http://www.sfgate.com/>

2. 내용 요약

1.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정책 및 노력

■ 美 연방정부

2000년 미 연방 국회는 인신매매를 예방하고(prevention) 피해자를 보호하고(protection)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prosecution)하고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비 시민권자와 비 영주권자인 피해자들도 연방정부로부터 다양한 도움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인 피해자들을 위한 “T”비자와 “U”비자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비자는 체류신분이 말각되면 추방될 것을 우려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경찰 신고를 기피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발급되는 “T”비자 혹은 다른 중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발급되는 “U”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미국에서 5년간 일하면서 지낼 수 있으며 3년 이후에는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2003년, 2005년, 2008년에 각각 재정립되었으며 연방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사건에 한해서 적용된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반 인신매매 단체 (President Obama’s Anti-Trafficking Initiative)를 조직하여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인신매매 수사에 대한 지침서 및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렸으며 대통령령을 통해서 공급자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였다.

■ 캘리포니아 주정부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주로 미국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가장 많은 네 개의 주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전 지역에서 인신매매 관련 피해신고 전화와 문자를 접수하는 국가 인신매매 자원센터(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 신고 중 캘리포니아에서 걸려온 전화가 약 10%로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고 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5년 캘리포니아 국회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Californi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5)을 통과시킴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연방법과는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신매매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미성년자인 경우 징역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연방법의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의 처벌 기준인 최대 15년과 비교했을 때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반 인신매매 연합(California Alliance to Combat Trafficking and Slavery)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국회는 2012년 11월 캘리포니아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처벌법(Californian against Sexual Exploitation)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성착취적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인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매춘법(pimping law) 등의 다른 조항을 이용해서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한다.

Number of Arrests and Convictions in California
Under § 236.1 (Human Trafficking)

Year	Number of Arrests	Number of Convictions
2007	33	10
2008	34	18
2009	52	19
2010	76	17
2011	133	28
2012 (through 9/30/12)	113	21
Total	441	113

**Number of Convictions in California
Under Selected Sections of the California Penal Code**

Year	§ 266h (Pimping)	§ 266i (Pandering)	§ 266j (Procuring a minor for lewd or lascivious act)	§ 267 (Abducting a minor for prostitution)	§ 311.4 (Use of minor for obscene matter)	§ 653.22(A) (Loitering with intent to commit prostitution)
2007	67	49	8	0	26	1469
2008	69	52	6	0	38	1,596
2009	59	43	3	0	39	1,675
2010	64	41	0	0	27	1,471
2011	71	35	6	0	31	1,582
2012 (Through 9/30/12)	74	43	2	1	33	1,088
Total	404	263	25	1	194	8,881

[자료: Human Trafficking in California 2012 Report]

위의 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인신매매 처벌법으로 인한 유죄선고(conviction)는 113건에 불과하였지만 관련된 다른 처벌법에 의해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는 총 8,000건이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의 인신매매 관련 형법을 정리한 표이다.

181	Infringement of personal liberty or attempt to assume ownership of persons
186	Distribution of proceeds from forfeiture sale, AKA California Control of Profits of Organized Crime Act (See 186.2 (a)(28))
236.1	Human Trafficking
236.1(c)	Human Trafficking of Minors
236.2	Dut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use due diligence to identify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dicators
236.3	Real property used to facilitate violation of [Human Trafficking] shall have nuisance procedures applied
236.5	Duty of law enforcement agencies upon encounter with victim of human trafficking regarding LEA endorsements
266 (k)	Additional fines; Use for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and counseling and to serve min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273.7	Disclosure of trafficking or domestic violence shelter
293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victim of sex offense or human trafficking

784.8	Severence of counts in case of human trafficking (venue; joinders; where crime involves multiple jurisdictions
13519.14	Training and guidelines for handling human trafficking complaints
14023	Priorities (The Attorney General shall give priority to matters involving organized crime, gang activities, drug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and cases involving a high degree of risk to the witness. Special regard shall also be given to the elderly, the young, battered,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inform, the handicapped, and victims of hate incidents
18259.7	Pilot Program in Los Angeles to address needs of sexually exploited minors
13283	Noncitizen human trafficking victims have access to refugee cash assistance
AB 1956 (2012)	Tattoo Removal for Juvenile Victims of Trafficking
AB 2040	Record Expungement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B 2212	Civil Damages
AB 2466	Asset Forfeiture
AB 1193	Hotline Posting
SB 1091	Witness Support for Victims

[출처: <http://www.caseact.org/learn/law/>; <http://sagesf.org/state-california-legislation>; <http://www.polarisproject.org/state-map/california>]

또한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공급망 투명성 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총 연매출액이 1억 달러가 넘는 판매자와 제조업자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수립되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제품의 공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사업에 대한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청구하는 소송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현재 연방 국회에서도 캘리포니아의 공급망 투명성 법을 모델로 삼은 유사한 법안(The Business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Trafficking and Crime Victims Assistance Programs)과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Program)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지원, 보건 서비스,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 재배치 및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Witness Relocation and Assistance Program)과 피해자/목격자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Victim/Witness Assistance Program)을 통해서 목격자와 피해자를 가해자 집단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법률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비 시민권자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보호 프로그램(Unaccompanied Refugee Minors Program) 또한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은 지역별 테스크포스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9개의 Regional Anti- Human Trafficking Task Force를 신설하였다.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고위 공무원, 법조인 및 비정부기구(NGO)의 리더들로 구성된 이들 테스크포스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피해자지원시설 등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조인, 피해자지원시설 등 여러 관계자들에게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개의 테스크포스에 따르면 2010년 중순부터 2012년 중순까지 2년 동안 접수된 인신매매 범죄는 2,552건이었으며 이 중 피해자 수는 총 1,277명, 가해자 수는 1,798명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 중 56%가 성착취적 인신매매의 피해를 당했으며 국적이 알려진 피해자 가운데 72%가 미국시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 캘리포니아 비정부기구(NGO)

캘리포니아에는 반 인신매매 관련 정책을 지지하고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형성된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인신매매 반대 협회, 아시안 반 인신매매 연합, 아시안 태평양 법률사무소, 아시안 여성 쉼터, SAGE 등이 있다.

○ San Francisco Collaborative Against Human Trafficking

샌프란시스코 인신매매 반대 협회는 30여개의 단체 및 기관이 속해있는 협력체로 다양한 비정부단체, 정부단체, 사법기관, 서비스시설, 교육자들과 지역 시민들의 모임이다. 이 협회는 협력, 교육, 아웃리치, 정책 옹호활동, 생존자 지원활동 등을 통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샌프란시스코 정부 소속 Human Rights Commission과 Department on the Status of Women의 직원들이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착취, 폭력, 인신매매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방침(non tolerance stance)을 세우고 샌프란시스코의 반 인신매매 활동가들과 전문가들 간의 강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Asian Anti-Trafficking Collaborative

아시안 반 인신매매 연합은 아시아 태평양 법률사무소(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 아시안 여성쉼터(Asian Women's Shelter)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네 개의 단체로 구성된 연합이다. 아시아 태평양 법률사무소는 반 인신매매 프로젝트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른 세 개의 단체와의 연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주지, 의료 서비스, 상담, 직업 훈련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정부나 NGO에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반 인신매매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 Asian Women's Shelter

Asian Women's Shelter에서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견될 경우 이들을 수감하지 않고 인신매매 사건의 증인으로 보호하도록 돕고 있다. 단순히 생존자(survivor) 여성에게 단순히 주

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sian Women’s Shelter 프로그램은 12주 간 운영되며 만일 그 기간 내에 주거지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 보통은 12주 내에 샌프란시스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시 주거 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rogram)에 들어가서 1년 또는 2년간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철저하게 비밀리에 운영되는 여성쉼터의 주거공간에서는 한번에 15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면 피해 여성의 자녀 및 가족도 함께 지낼 수 있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성들 외에는 누구도 그 쉼터의 주소나 위치를 알 수 없으며 방문을 허가하지 않는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사례 담당자(case manager)와 일주일에 한번 또는 2주에 한번 씩 상담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사례 담당자들은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매일 확인한다. 또한 Asian Women’s Shelter에서는 피해 여성들에게 옷, 음식, 버스 카드, 전화 카드 등을 제공해주며 그들이 T비자를 받고 새로운 신원(identity)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생존자들은 새 신원을 이용하여 시립대학(City College of San Francisco)에서 무상으로 영어(ESL)나 기본 컴퓨터 클래스 등을 수강할 수 있다.

○ 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SAGE)

성착취적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Norma Hotaling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단체인 SAGE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보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SAGE에서는 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trauma)을 치유하고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 상담; 동료 상담(peer counseling);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정신적 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법률 지원; 생활능력 훈련; HIV 상담; 침술 요법 등 다양한 전인(全人)적 치유 서비스; 초범 교화 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책 캠페인, 훈련,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성착취적 인신매매 한국여성 피해자 사례

검찰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한국인이 2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의 수는 최소 일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여성들이 어떠한 이유와 경로로 미국에서 성착취적 인신매매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 Asian Pacific Islander League Outreach의 한국인 변호사 김현미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이때까지 성매매로 검거된 한인 여성 중 일부는 사기를 당해 미국에 오게 되었고 일부는 성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너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노동 환경 및 조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권을 압수당하게 된다는 사실이나, 긴 노동 시간, 임금 액수, 번 돈에서 얼마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및 외부와의 연락 제한 등에 대해서는 모르고 온 것입니다. 인신매매 조직은 집세, 식비, 미용실 이용비, 심지어는 콘돔 비용까지도 모든 변수를 제한하고 (어느 미용실을 이용하고 어느 화장품 판매원에게서 화장품을 사고 어디에 있는 얼마짜리 집에서 생활하며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등) 자동적으로 피해 여성의 수당에서 제하여 가져갑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은 빚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하므로 결국에는 자신이 번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략] 이렇게 피해를 당한 한인 여성들이 구출되면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은 피해여성들은 한인사회에서 벗어나 일부러 다른 곳으로 일자리와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떠나지만 그 중에서는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성매매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은 정확한 근로 조건 혹은 근무 환경을 알지 못한 채 미국에 건너와 많은 빚을 지고 성(性)을 착취당하고 있다. 여성이 모든 조건에 사전 동의하고 “자의”로 미국에서 온 경우는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여성들은 초기에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도 박탈당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근래 가장 규모가 컸던 성착취적 인신매매 관련 사건은 2005년의 “Operation Gilded Cage” 사건이었다. 연방경찰은 Operation Gilded Cage라는 비밀작전을 수행해 LA와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마사

지 업소를 기습 단속해 대규모 성매매 조직을 적발하였다. 당시 한인 40명 이상이 조직책으로 체포되었고 이들의 감시 하에서 매춘 활동을 해온 100여명의 한인 여성이 발견되었다. 이들 여성 중 상당수는 음식점이나 바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거짓된 조건으로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조직은 텍사스와 콜로라도 지역에 까지 한인 매춘여성들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내 한인 성매매 업소의 운영방식이 많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Operation Gilded Cage 사건 이후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의 업소운영 방식이나 여성들을 감시하는 방식이 달라졌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반응 또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다수의 마사지업소가 한인 업소였습니다. 대규모의 조직이 여러 업소를 동시에 관리하고 일명 코리안 택시(Korean taxi)가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돌아다니며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들(external indicator)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인사회 내에서의 성산업은 예전보다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면 더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Operation Gilded Cage 사건으로 인해 한인사회 내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현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인신매매 피해 한국 여성의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전략과 수단을 바꾸어서 더욱 비밀스럽고 치밀한 범죄활동으로 진화된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주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로 옮겨가거나 인터넷 광고를 이용해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가 매춘업소(residential brothel)의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현미씨는 말한다. 또한 아래 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부족 현상으로 인해 성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현지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여성을 데려오는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인신매매, 성매매는 그 활동의 비밀스러운 성격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추론을 해본다면 한국에서 여성을 새로 인신매매해서 데려오는 사례 (recruitment)가 수적으로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성매매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이 지역에 충분한 규모의 “노동력”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발각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도 있고, 큰 이유는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정

도 체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심겨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몇 년 전부터의 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 때문에 국내에서도 성산업에 종사할 노동력을 찾는 것이 더 수월해 진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려는 여성들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현지 포주들도 이미 이용 가능한 노동력을 고용하면 더욱 쉽고 반드시 인신매매의 경로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포주들에게도 위험부담이 더욱 적고 비용이 더욱 적게 드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Operation Gilded Cage 이후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이 인신매매 수사와 처벌에 대해 갖는 인식이 더욱 퇴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건이 있을 당시 한인사회에서 쏟아진 비난과 부정적인 시각이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더욱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구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이후에도 성착취적 인신매매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